



# 광진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## 제 목 관용차량 불용 결정

1. 총무과-12314('16.05.20.)호 관련입니다.

2. 총무과에서 불용요청한 화물트럭(80마1702 외 7대)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 
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2조 및 시행규칙 50조,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5조에 따라  
 아래와 같이 불용결정하고자 합니다.

불용 물품 내역

(단위 : 천원)

분류번호	품명	규격	장부 가액	구입 일자	내용 연수	불용기준
25101611	화물트럭	화물트럭, 기아자동차, 1톤봉고프런티어 3.0 초장축더블캡울트라 외 5대	82,296	2004년	7년	○ 내용연수 및 최단 운행연한(10년)경과 ○ 차량 노후화로 인 한 안정성 저하 및 수 리비 과다 소요
		화물트럭, 현대자동차, 포터, 적재함덮개차, 포터초장축더블캡 SUP 외 1대	25,638			
계	8대	규격 첨부	107,934			

붙임 : 불용결정통보서 1부. 끝.

주무관 **박순재** 계약팀장 **박만우** 재무과장 **김종구** 기획경제국장 05/24  
**고재풍**

협조자

시행 재무과-9261 ( ) 접수 ( )

우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/ <http://www.gwangjin.go.kr/>

전화 02-450-7354 /전송 02-3425-1725 / / 대시민공개

“동화나라 광진에서 상상충전!!”